

##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### 1. 보험업법 일부 준용(안 제6조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만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, 신탁중앙회의 경우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의무 등을 규정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여, 신탁중앙회가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소비자가 신탁중앙회의 실손의료공제 계약 체결 시 불필요한 중복계약 체결 방지 기대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### 2.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(안 제9조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재 조합은 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

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야기할 수 있으며, 조합의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여 영업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조합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기대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### 3.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추가(안 제39조, 제95조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재 조합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환전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,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조합의 사업 종류로 외국환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를 추가하고자 함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조합에서 영위하고 있는 환전업에 대한 근거를 신탁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 제고 효과 기대

**마. 그 밖의 참고사항**

- 없음

**4. 조합 및 중앙회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근거 마련(안 제39조, 제78조)**

**가. 제·개정 이유**

- 조합 및 중앙회가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

**나. 제·개정 내용**

- 조합 및 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‘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’의 근거를 마련

**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**

- 없음

**라. 입법효과**

-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탁의 역할 강화 기대

**마. 그 밖의 참고사항**

- 없음

**5.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등 확대 (안 제39조, 제78조, 제95조)**

**가. 제·개정 이유**

- 신탁법에서는 타 금융관련법령과 달리 부대사업 및 목적사업의 승인

근거가 없어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범위가 불분명

**나. 제·개정 내용**

- 신탁중앙회와 달리 ‘목적사업’의 수행 근거가 없는 조합의 사업 종류에 ‘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, 구체적인 ‘목적사업’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
-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‘부대사업’을 수행할 수 있도록 ‘부대사업’의 승인 근거를 명확화
-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사업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목적사업에 한해 농·수·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

**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**

- 없음

**라. 입법효과**

- 상호금융권의 업무범위 명확화 및 영업경쟁력 제고 효과 기대

**마. 그 밖의 참고사항**

- 없음

**6.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(안 제39조의2, 제95조, 제101조)**

**가. 제·개정 이유**

-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불공정한 여신거래(일명 ‘끼기’)를 내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법령상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

**나. 제·개정 내용**

-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의 가입·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
-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, 농·수협 및 산림조합에도 적용하며,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

**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**

- 없음

**라. 입법효과**

-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효과 기대

**마. 그 밖의 참고사항**

- 없음

**7.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(안 제78조)**

**가. 제·개정 이유**

-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, 중앙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함

**나. 제·개정 내용**

-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
**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**

- 없음

**라. 입법효과**

- 법적 불확실성 제거 효과

**마. 그 밖의 참고사항**

- 없음

**8.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등 (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)**

**가. 제·개정 이유**

-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중앙회에 설치·운영하고, 사회적경제지원기금관리위원회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도록 함

**나. 제·개정 내용**

- 조합, 중앙회 및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,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,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기금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
**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**

- 없음

**라. 입법효과**

-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험의 역할 강화 기대

**마. 그 밖의 참고사항**

- 없음

**9.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제출을 규정한 감독규정의 근거 마련 (안**

제83조의3, 제89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조합 및 중앙회가 재무상태개선계획 등을 중앙회장 및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에, 중앙회장이 조합에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 또는 요구할 수 있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적 불확실성 제거 효과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10. 제재관련 제도 개선(안 제30조의2, 제84조, 제95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농·수·산림조합에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, 임직원의 수외 뿐만 아니라 횡령·배임 등에도 행정상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재 관련 일부 미미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횡령·배임 등의 행정상 제재 근거 명확화

- ‘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’ 등에서 정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 종류를 반영하여 ‘건축’을 ‘문책경고’, ‘주의·경고’를 ‘주의적경고’, ‘주의’로 변경하고, ‘주의적경고’ ‘주의’의 조치 요구권한을 금감원장에 위탁

- 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, ② 퇴임한 임원,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, ③ 업무의 전부정지 및 설립인가의 취소를 제외한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, ④ 고객응대직원의 보호, ⑤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규정 및 ⑥ 과태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농·수·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에도 적용하여 상호금융업권의 균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상호금융권 위법사항에 대해 ‘동일행위-동일규제’ 적용 효과 기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11. 벌칙 관련 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(안 제99조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신탁중앙회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위탁받은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,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 하더라도 형법상 수뢰죄 등이 적용되지 않는 등 처벌에 한계가 존재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의 수뢰죄 등(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)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부패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

**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**

- 없음

**라. 입법효과**

- 신협중앙회 임직원의 부패방지 및 책임성 강화 효과 기대

**마. 그 밖의 참고사항**

- 없음

**12. 용어 정비(안 제24조)**

**가. 제·개정 이유**

- 용어정비

**나. 제·개정 내용**

-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실무에 널리 쓰이는 용어를 반영하여 ‘대차 대조표’를 ‘재무상태표’로 변경함

**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**

- 없음

**라. 입법효과**

- 용어정비 효과 기대

**마. 그 밖의 참고사항**

- 없음